



새롭게 도약하는 희망 달서

- 대구광역시달서구 월배장애인재활복지센터 재위탁 동의안 -

제 안 설 명 서

2022. 8.



대구광역시 달서구

<http://www.dalseo.daegu.kr>

[어르신장애인과]

- 대구광역시달서구 월배장애인재활복지센터 재위탁 동의안 -

제 안 설 명 서

설 명 자: 어르신장애인과장

대구광역시달서구 월배장애인재활복지센터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안이유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 지역 장애인들의 재활,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운영중인 월배장애인재활복지센터의 위탁기간이 2022. 12. 31.로 만료됨에 따라,
-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장애인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간 위탁을 추진함에 있어 「대구광역시달서구 월배장애인재활복지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 위탁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먼저 시설 및 위탁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월배장애인재활복지센터는 1998. 8. 13.에 최초 개관하였으며 2019. 8. 31. 달서구장애인복지센터가 신축·개관하면서 현위치인 갈밭남로 71(도원동)으로 이전·운영 중이며 연면적은 867.19m² 입니다.
 - 수탁법인은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 달서구지회로 위탁기간은 3년이며, 주요사업으로는 장애인들을 위한 상담·봉사지원 사업, 재활과 자립을 위한 사업, 교육·홍보 등 장애인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 및 재활운동실과 재활작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과 운영주체 선정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2022년 9.~10월중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 추진 경력이 있는 지역내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장애인단체 등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하고, 10.~11월중 수탁기관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정한 심사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 12월에 위탁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 지역 장애인들의 다양하고 민감한 복지욕구를 충족하고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해 본 달서구 월배장애인재활복지센터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배장애인재활복지센터 재위탁 동의안

의 번 호	안 00922018
-------------	-------------------

제출일자: 2022. 8. 18.

제출자: 달서구 청장
(어르신장애인과장)

1. 제안이유

-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운영 중인 월배장애인재활복지센터의 위탁기간이 2022. 12. 31.로 만료됨에 따라,
- 보다 전문적인 운영과 효율적인 장애인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간 위탁을 추진함에 있어 「대구광역시 달서구 장애인재활복지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대구광역시 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월배장애인재활복지센터 운영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필요성

- 추진근거

- 「대구광역시 달서구 장애인재활복지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 「대구광역시 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제7조

- 필요성

- 장애인들의 다양하고 민감한 복지 욕구를 신속하게 대응하고, 민간 기관의 축적된 전문 지식과 인력 활용을 통해 장애인복지서비스의 전문성 및 효율성 도모

다. 위탁사무 내용: 월배장애인재활복지센터 시설 유지·관리 및 운영 전반

- 장애인의 자립·자활을 위한 근로에 관한 사업
- 장애인의 재활상담 및 지도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라. 위탁시설 현황

시설명	소재지	규모	현 위탁현황		비고 (개관일)
			위탁기간	수탁기관	
월배장애인 재활복지센터	갈崇拜로 71(도원동) 달서구장애인복지센터 1~2층	연면적867.19㎡ 1층 455.79 2층 411.40	2020.1.1.~ 2022.12.31.	(사)한국지체 장애인협회 달서구지회 (정운철)	1998.8.13.

마. 민간위탁기간: 3년(2023. 1. 1.~2025. 12. 31.)

바. 수탁자 선정방식: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심사위원회 심사·선정

사.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정책자문위원회 자문

- 경제적 효율성, 민간전문지식 활용가능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현재로서는 민간위탁이 가장 적절
- 후원금 및 다양한 민간재원 조달이 가능하므로 경제적 효율성 제고
- 인적 네트워크 형성 및 전문성을 갖춘 인력 확보 용이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붙임1 참조

나.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의견: 붙임2 참조

다. 월배장애인재활복지센터 재위탁 추진 계획: 붙임3 참조

라. 향후 추진일정

- 위탁운영법인 모집 공고 및 접수 : 2022. 9.~10월
- 수탁기관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 2022. 10.~11월
- 선정결과 공고 : 2022. 11월
- 위탁계약 체결 등 : 2022. 12월

【붙임 1】 관계법령

□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재활복지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재활복지센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역 내 사회복지법인 또는 그 밖에 비영리법인, 장애인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재활복지센터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단체)설립인가(등록)증 사본
2. 법인(단체) 정관
3. 법인(단체) 재산목록(재산증빙서류 첨부)
4. 사업계획서(운영비부담 및 인력확보계획 포함)
5. 대표자 사용인감
6. 법인(단체)의 최근 1년간 사업실적

□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등) 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사무
- ② 구청장은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 ③ 구청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구청장은 제4조제1항의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 여건 등

제6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의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할 때 위임사무는 미리 해당 사무를 위임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조례에서 민간위탁 사무로 정한 경우
2.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
3.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

② 구청장이 자치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때에는 사전에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7조(민간위탁 동의안) 구청장이 제6조에 따라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기간
6. 수탁자 선정방식
7.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8. 재계약 시에는 민간위탁 사무의 성과평가 또는 감사결과
9. 기타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붙임 2】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검토기준	검토내용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근 사회복지 분야에서 민간과의 협력적 동반자 모델을 강조하며 민영화가 주도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민간위탁 방식이 추세 민간재원 조달, 정규직 전환 등 인력 운용,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측면에서 민간위탁이 효과적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적으로 직접운영 방식이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전성 확보가 용이하지만, 민간위탁 운영방식은 법령 및 제반 규정에 따른 운영을 통해 장애인복지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전성 확보 가능 수탁기관에 대한 정기적 지도점검, 교육 등 관리가 있으면 공공성 및 안전성 확보 가능
경제적 효율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간위탁의 경우 수탁기관의 다양한 재원(후원금 등) 조달이 가능하여 재정 부담을 완화 할 수 있어 직접운영 방식 보다 경제적 효율성이 높음.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복지 서비스의 경우 전문인력의 지속적 케어가 중요한데 민간 위탁은 축적된 경험에서 나오는 전문지식과 기술 활용이 용이 다양한 인적 인프라의 네트워크와 전문적인 지식 등을 바탕으로 관계 기관들과의 긴밀한 협력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직접운영 보다 민간위탁이 효율적
성과 측정의 용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양한 조사도구를 활용, 이용자 만족도 등 현장변화에 빠르게 대응 할 수 있어 성과 측정에 유리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접운영에 비해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확보가 다소 어려울 수는 있지만 지도·감독기관의 감독과 법규에 의한 규정이 있어 투명성이 크게 저해 될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음 수탁기관의 경우 법인의 자체 감사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구청의 주기적인 점검 등이 보완 될 수 있음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월배장애인재활복지센터는 공익·공공서비스 제공 목적의 운영시설 이므로, 민간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음

□ 검토 결과

⇒ 월배장애인재활복지센터 사무는 지역 장애인들의 다양하고 민감한 욕구에 대응하고자 민간기관의 축적된 전문지식 활용과 행정비용의 절감을 통해 효율성 제고에 용이한 민간위탁사무가 ‘적정’ 하다고 판단됨.

【붙임 3】 월배장애인재활복지센터 재위탁 추진 계획

월배장애인재활복지센터 위탁 운영기간이 만료됨(2022. 12. 31.)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공익·전문성을 가진 수탁자를 선정하여 시설 운영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I 관련 규정

-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재활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II 추진 방향

- 공개모집을 통한 수탁기관 선정으로 투명성 제고
- 합리적인 선정기준과 객관적 절차 운영으로 최적의 수탁기관 선정
- 수탁기관심사위원회 구성 · 심의로 질적 수준 제고

III 위탁 개요

□ 시설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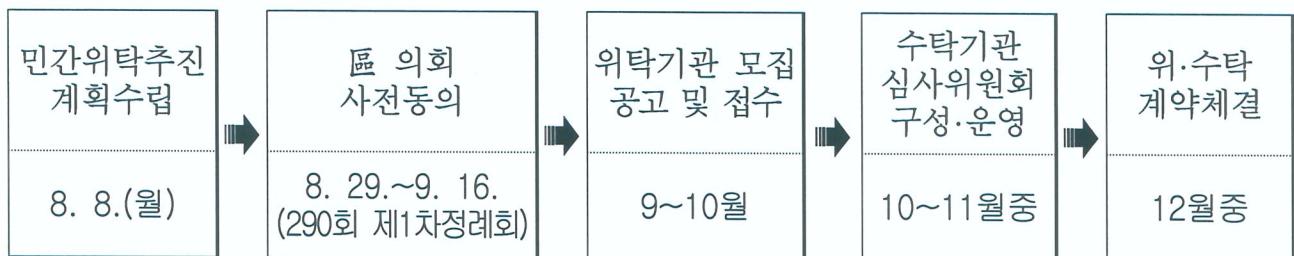
시 설 명	소 재 지	규 모	現 위탁현황		비 고 (개관일)
			위탁기간	수탁기관	
월배장애인재활복지센터	갈밭남로 71,(도원동) 달서구장애인복지센터 1~2층	연면적867.19㎡ 1층 455.79 2층 411.40	2020.1.1.~ 2022.12.31.	(사)한국지체 장애인협회 달서구지회 (정운철)	1998.8.13.

□ 기 간: 2023. 1. 1.~2025. 12. 31. [3년]

대상사무: 월배장애인재활복지센터 시설 유지 · 관리 및 운영 전반

- 장애인의 자립 · 자활을 위한 근로 작업에 관한 사항
- 장애인의 재활상담 및 지도에 관한 사항 등
-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재활복지센터 설치 · 운영에 관한 조례」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추진절차



신청자격: 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 달서구 소재 사회복지법인 또는 그 밖에 비영리법인, 장애인단체

* 수탁기관으로 선정되더라도 부적격사유 발생 시 선정 무효로 하며 차순위 기관을 선정

IV 세부 추진 계획

민간위탁 적정성 사전 검토

- 근 거: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
- 기 간: 2022. 7. 20.(수)~7. 26.(화)
- 방 법: 정책자문위원회 복지 · 문화 · 보건 분과 위원 서면자문 검토
- 검토결과: ‘적정’ 【붙임】

区 의회 민간위탁 사전 동의

- 근 거: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
- 기 간: 2022. 8. 29.~9. 16.(제290회 제1차정례회 예정)
- 내 용: 민간위탁 추진 区 의회 사전 동의

□ 모집공고 및 접수

- 모집방법: 공개모집
- 공고기간: 9월중(15일간)
- 접수기간: 10월중(7일간, 토 · 일 · 공휴일 제외)
 - 접수시간: 평일 근무시간(09:00~18:00)
 - 모집결과 신청법인이 없거나, 1개 법인만 신청하였을 경우 재공고: 7일간
- 접수처: 달서구청 어르신장애인과(1층, 장애인복지팀)
- 접수방법: 직접 방문제출
 - * 우편 · 택배 및 이메일 접수 불가

□ 수탁기관심사위원회 구성 · 운영 ▷ 별도계획 수립

위원회 구성

- 근거: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9조
- 구성: 9인 이내
 -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 장애인 관련 업무 공무원
 - 장애인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그 밖에 법률 전문가 등 구청장이 위원회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시기: 10월중
- 임기: 심사 종료 시 자동해산

위원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2022. 10~11월중 / 달서구청 5층 상황실(예정)
- 참석대상: 심사위원
- 내용: 접수된 수탁기관 심사 · 선정

심사 및 선정

- 심사방법: 심사기준표에 의한 평가
 - ▶ 현장심사: 신청 법인(단체)의 사업계획 등 설명, 질의응답 등
- 심사기준: 수탁자의 적격성, 시설운영의 전문성, 지역사회와의 협력적 관계조성 능력 등 종합적 평가
- 심사결정방법
 - (1) 신청법인(단체)이 2개 이상인 경우
 - 심사위원별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에 따라 개별심사
 - 최고점수 및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의 점수 합산 평균이 높은 법인
 - 동일 점수를 획득한 경우 ①법인(단체)의 자부담 비율이 높은 법인(단체) ② 사업운영의 계획성 및 적정성 점수가 높은 법인(단체)
 - (2) 신청법인(단체)이 1개인 경우: 재공고
 - (3) 재공고 후 신청법인(단체)이 1개인 경우
 - 평균득점 70점 이상 시 결정, 70점 미만 시 재공고
- 결정통지: 심사결과 구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 통지

□ 위·수탁 계약체결 ▷ 별도계획 수립

- 근거: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
- 일시: 2022. 12월중
- 주요내용: 위탁내용, 위탁기간, 수탁기관의 의무, 예산지원액 및 계약위반시의 책임 그밖에 필요한 사항

V 행정사항

-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2022. 8. 18.(목)限
- 모집공고 및 접수: 2022. 9.~10월
- 수탁기관심사위원회 구성·운영: 2022.10.~11월
- 위탁계약 체결: 2022. 12월